



: 2019-07-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904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안은성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담 담당변호사 이윤근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권리양도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5. 12.경 부산 남구 D아파트, E호, F호, 총 2개호실 상가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상가에서 'G'라는 상호의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마트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은 피고 C의 딸인 피고 B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6. 6. 10.경 주식회사 H의 컨설팅을 통하여 피고 B의 명의를 차용한 피고 C과 이 사건 마트의 영업시설을 권리금 18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6. 10. 10,000,000원, 같은 달 17. 20,000,000원, 같은 달 28. 155,000,000원, 합계 1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6. 6. 28. 주식회사 I와 위 상가들 중 F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주식회사 I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1. J와 위 상가들 중 E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7. 10.부터 2021. 7. 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J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6. 7.경부터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한 주식회사 H에게 수수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1) 피고 C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판매되지 않은 물건이나 실제 판매된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의 물건을 POS 단말기에 매출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린 후, 그 부풀린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원고에게 제시하여 마치 그와 같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85,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은 2018. 9. 6.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8노1187호 사건), 위 판결은 대법원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매출액에 관한 피고 C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권리금으로 18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원고가 피고 C의 기망행위에 속아 편취당한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한 주식회사 H에게 수수료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도 주식회사 H이 컨설팅 업체로 서명·날인한 점에 비추어 피고 C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수수료 5,000,000원도 피고 C의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마트의 상가 임대인들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60,000,000원의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상가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들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피고 C의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보



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190,000,000원(= 위 권리금 185,000,000원 + 위 컨설팅 수수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불법 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3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C에게 송달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C의 딸인 피고 B에게 2016. 8. 29. 송달되었고, 피고들이 그 다음날인 8. 30.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답변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C에게 2016. 8. 30.경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의 딸이자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 C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등으로 피고 C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 B도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 C의 딸로서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 185,000,000원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C만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기망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스스로도 피고 B가 이 사건 마트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마트가 실제 피고 C에 의해 운영 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도 피고 C의 관여 하에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의 사기 범행을 공모 하거나 방조하는 등으로 피고 C과 공동으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정현
	판사	노용준
	판사	최지연